

## 제9장 기업인의 일시 입국

### 제9.1조 일반 원칙

1.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특혜 무역 관계, 양 당사국의 법률 및 부속서 9-가의 규정에 따라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촉진하고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대한 투명한 기준 및 절차를 수립하려는 양 당사국의 공동의 희망, 그리고 국경 안전을 보장하며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국내 노동력과 영구적 고용을 보호할 필요성을 반영한다.
2. 이 장은 다른 쪽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한쪽 당사국의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시민권, 국적, 거주 또는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이 자국 영역으로 입국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
4.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게 출입국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만으로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제9.2조 일반 의무

각 당사국은 제9.1조에 따라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를 적용하며, 특히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이 협정에 따른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지연하지 않도록 그 조치를 신속하게 적용한다.

### 제9.3조

#### 일시 입국의 허용

1. 양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대하여 약속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과 그 약속을 규율하는 조건은 부속서 9-가에 기재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기업인이 다음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제1항에 따른 약속에 규정된 범위에서 그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의 연장을 허용한다.

가. 관련 출입국 절차를 위한 허용 당사국의 규정된 신청 절차를 따를 것, 그리고

나. 일시 입국 또는 일시 체류 연장을 위한 모든 관련 자격 요건 및 공중 보건과 안전 및 국가안보 관련 조치와 같은 그 밖의 관련 조치를 충족할 것

3. 각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이 출입국 절차를 위한 신청의 처리를 위하여 부과하는 수수료가 이 협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을 부당하게 무효화 또는 침해하거나 이 협정에 따른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을 지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리적이도록 보장한다.

4. 한쪽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업인이 전문직을 수행하거나 달리 사업 활동에 종사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면허 또는 의무적 행동 규범을 포함한 그 밖의 요건을 충족시킬 것으로부터 면제된다고 해석되지 않는다.

### 제9.4조

#### 투명성

1. 제19.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 가. 이 장과 관련된 자국의 조치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이 숙지할 수 있도록 할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 나. 이 협정의 발효일 후 6개월 이내에,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숙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적용 가능한 법 및 규정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요건에 대하여 통합 문서로 설명자료를 준비, 공표하고 자국 영역과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 다. 기업인의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출입국 조치를 수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이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이를 숙지할 수 있도록 할 방식으로 신속하게 공표되고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제19.1조(공표)에 더하여, 각 당사국은 기업인의 일시 입국과 관련된 신청 및 절차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부터의 질의에 응답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3.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그 당사국은 그 신청의 처리 상황에 대한 정보 또는 신청에 대한 결정을 과도한 지체 없이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제9.5조

### 작업반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 장에 관련된 사안을 고려하고 검토하도록 각 당사국의 정부 대표로 구성되는 기업인의 일시 입국 작업반(이하 “작업반”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2. 작업반은 필요한 경우, 이 장과 관련된 다음과 같은 사안을 고려하기 위하여 회합한다.
  -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

- 나.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대한 정보 교환을 위한 절차의 수립
- 다. 기업인의 일시 입국을 더욱 촉진하기 위한 조치의 개발
- 라. 이 장에 관한 상호 관심이 있는 그 밖의 모든 조치, 그리고
- 마. 공동위원회가 결정한 이 장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문제

### 제9.6조 협력

제9.1조에 규정된 원칙을 고려하여, 양 당사국은 가능한 한 다음을 하도록 노력한다.

- 가. 제도적 역량을 강화하고 출입국 당국 간 기술적 지원을 촉진하는 데 협력할 것, 그리고
- 나. 생체인식기술이용, 승객선진정보시스템, 여행서류 보안과 관련된 것을 포함하는 출입국 사안의 맥락에서 프로그램과 기술 규정 및 이행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교환할 것.

### 제9.7조 분쟁해결

1. 양 당사국의 관련 당국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호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이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것과 같이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으로부터 발생된 구체적인 문제에 관하여 합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 제20장(분쟁해결)이 그 문제에

적용된다.

3.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일시 입국 허용의 거부에 대하여 제20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개시하지 않는다.

가. 그 사안이 반복된 관행과 관련되는 경우, 그리고

나. 영향을 받은 기업인이 그 특정 사안에 대하여 이용 가능한 행정적 구제를 완료했을 경우

4. 권한 있는 당국이 행정 절차가 개시되었을 때부터 1년 내에 그 사안에 대하여 최종 판정을 내리지 않았고, 판정을 내리지 못한 것이 그 기업인이 야기한 지체에 기인하지 않는 경우, 제3항나호에 언급된 구제는 완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 제9.8조

##### 다른 장과의 관계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장, 그리고 제1장(최초규정 및 정의), 제19장(투명성), 제20장(분쟁해결), 제21장(예외) 및 제23장(최종규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것을 제외하고, 당사국의 출입국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 어떠한 의무도 부과하지 않는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다른 장 및 그 부속서에 대하여 의무나 약속을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 제9.9조

#####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기업인이란 상품 무역, 서비스 공급 또는 투자 활동의 수행에 종사하는 당사국의 국민을

말한다.

**출입국 절차**란 일시 입국을 허용하는 사증, 허가, 승인이나 그 밖의 문서 또는 전자적 허가를 말한다.

**출입국 조치**란 외국 국민의 입국과 체류에 영향을 미치는 법, 규정, 절차, 요건 또는 관행을 말한다. 그리고

**일시 입국**이란 다른 쪽 당사국의 기업인이 영구적 거주 의도 없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에 입국하는 것을 말한다.

부속서 9-가  
기업인의 일시 입국

제1절  
상용 방문자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 부록 9-가-1에 규정된 상용 활동에 종사하려는 기업인에게 취업 허가를 획득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일시 입국을 허용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해야 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 국적의 증명

나. 그 기업인이 부록 9-가-1에 규정된 상용 활동에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입국의 목적을 기술한 문서, 그리고

다. 제안된 상용 활동의 범위가 국제적이고, 그 기업인이 현지 노동시장에 진입하려고 하지 않음을 입증하는 증거

2. 각 당사국은 기업인이 다음을 입증함으로써 제1항다호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음을 규정한다.

가. 제안된 상용 활동의 주된 수입원이 일시 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나. 기업인의 주 영업소 및 실제 이윤 발생 장소가 적어도 대부분 일시 입국을 허용하는 당사국의 영역 밖에 있다는 것

나호에 언급된 사안을 입증하기 위하여 당사국이 요구할 수 있는 증명은 합리적이고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되지 않는다.

3. 어떠한 당사국도

- 가. 제1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또는
- 나. 제1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관련된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 제2절

### 무역업자 및 투자자

1. 각 당사국은 감독자나 임원의 자격으로 또는 핵심 기술과 관련된 자격으로 다음을 하려는 기업인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제공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입국에 적용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해야 한다.

- 가. 주로 해당 기업인이 국민인 당사국의 영역과 입국하려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 사이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상당한 무역을 수행하는 것, 또는
- 나. 해당 기업인 또는 그 기업인의 기업이 상당한 금액의 자본 투자를 약정했거나, 약정하는 과정에 있는 투자를 설립, 개발, 운영하거나 투자의 운용에 자문이나 핵심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2. 어떠한 당사국도

- 가. 제1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가진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또는
- 나. 제1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관련된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 제3절

### 기업 내 전근자

1. 각 당사국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하는 기업 내 전근자에게 일시 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제공한다.

2. **기업 내 전근자**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설립된 자회사, 지점 또는 지정된 계열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회사의 피고용인으로서, 일시 입국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어 있었으며,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임원, 관리자 또는 전문가에 해당하는 인을 말한다.

가. **임원**이란 주로 조직의 경영을 지휘하고, 의사결정에서 넓은 재량을 행사하며, 고위급 임원, 이사회 또는 그 회사의 주주로부터 일반적인 감독 또는 지시만을 받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임원은 실제 서비스의 공급이나 조직의 서비스와 관련된 임무는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않는다.

나. **관리자**란 주로 조직 또는 그 조직의 부서를 지휘하고 그 밖의 감독직, 전문직 또는 관리직 피고용인의 업무를 감독 및 통제하며, 채용 및 해고 권한이나 채용, 해고 또는 그 밖의 인사 조치를 권고하는 권한을 보유하고, 일상적 업무수행에 대하여 재량권을 행사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이는 감독을 받는 피고용인이 전문직이 아닌 한 제일선의 감독자는 포함하지 않으며,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한 임무를 주로 수행하는 피고용인도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전문가**란 지속적인 전문성을 지닌 고급 수준의 지식과 조직의 서비스, 연구, 장비, 기술 또는 경영에 대하여 재산권적 지식을 보유하는 조직 내의 자연인을 말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가. 제1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또는

나. 제1항에 따른 일시 입국과 관련된 수량제한을 부과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제4절**  
**계약 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국은 부록 9-가-3에 규정된 직업의 계약 서비스 공급자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인에게는 다음을 제출하는 경우 일시 입국을 허용하고 확인 문서를 제공한다. 다만, 그 기업인은 일시 입국에 적용 가능한 출입국 조치를 달리 준수해야 한다.

가. 다른 쪽 당사국 국적의 증명

나. 그 기업인이 그렇게 종사할 것임을 입증하고 입국의 목적을 기술한 문서, 그리고

다. 관련된 최소한의 교육 요건 또는 대체 자격인증서의 취득을 입증하는 문서

2. **계약 서비스 공급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당사국의 기업인을 말한다.

가. 전문적 지식의 이론적 및 실질적 적용을 요구하는 전문화된 직업에 종사하는 인

나. 각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요건에 따라 제공될 서비스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학문적·전문적 자격과 전문적 자격을 갖춘 능력에 기반한 경험을 보유한 인

다. 다른 쪽 당사국에 상업적 주재를 두지 않으며, 공급되는 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서비스 계약을 취득한 법인의 피고용인으로서 계약된 서비스의 공급에 종사하는 인. 그 계약은 그 당사국의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라. 승인 신청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그 법인의 피고용인이었던 인, 그리고

마. 다른 쪽 당사국에 소개한 법인으로부터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않도록 요구되는

인

3. 각 당사국은 계약 서비스 공급자의 일시 입국과 관련된 수량제한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따른 일시 입국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절차, 노동시장심사 또는 이와 유사한 효과를 지니는 그 밖의 절차를 요구할 수 없다.

## 부록 9-가-1

### 상용 방문자

다음 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한쪽 당사국의 기업인

#### *회의 및 협의*

회의,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기업관계자와의 협의에 참여하는 한쪽 당사국의 기업인

#### *연구 및 설계*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한쪽 당사국의 기술, 과학 및 통계 연구원

#### *성장, 제조 및 생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하여 상업적 거래를 수행하는 한쪽 당사국의 구매 및 생산관리 인력

#### *마케팅*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하여 연구 또는 분석을 수행하는 한쪽 당사국의 마케팅 연구원 및 분석가

무역 컨벤션에 참석하는 당사국의 무역박람회 및 홍보 인력

#### *판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하여 상품을 배달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지는 않으나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주문을 받거나 계약을 협상하는 한쪽 당사국의 판매 담당자 및 대리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하여 구매를 행하는 한쪽 당사국의 구매자

### 유통

상품의 수입 또는 수출의 원활화와 관련하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당사국의 통관  
중개인

### 판매 후 서비스

일시입국을 하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당사국 영역 밖에 위치한 기업으로부터  
구매한 상업용 또는 산업용 장비 또는 기계의 판매에 부수되는 보증 또는 그 밖의 서비스  
계약에 따라, 판매자의 계약상 의무에 필수적인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보증 또는 서비스  
계약 기간 동안 서비스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수행하도록 근로자를 교육하는 당사국의  
설치자, 수리 및 유지보수 담당자 및 감독자

### 일반 서비스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을 위한 상업적 거래에 종사하는 한쪽 당사국의 관리  
및 감독 인력

기업관계자와 협의하거나 컨벤션에 참석 또는 참여하는 당사국의 홍보 및 광고 인력

컨벤션에 참석 또는 참여하거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작된 여행을 인솔하는 한쪽  
당사국의 관광업 인력(관광 및 여행사 대행인, 관광가이드 또는 여행업자)

요리 행사나 박람회에 참석 또는 참여하거나 기업관계자와 협의하는 당사국의 조리사 인력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한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서비스를 수행하는 한쪽 당사국의  
번역가 또는 통역가

회의, 세미나 또는 컨퍼런스에 참석하거나 기업관계자와의 협의에 참여하는 당사국의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제공자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한쪽 당사국의 가맹점 거래자 및 개발업자

## 부록 9-가-2 체류기간

한국의 경우,

1. 부속서 9-가의 제1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상용 방문자에게는 90일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2. 부속서 9-가의 제2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무역업자 및 투자자에게는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그 근거가 되었던 조건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연장될 수 있다.
3. 부속서 9-가의 제3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기업 내 전근자에게는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그 근거가 되었던 조건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연장될 수 있다.
4. 부속서 9-가의 제4절에 따라 한국에 입국하는 계약서비스 공급자에게는 1년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5. 90일을 초과하여 한국에 체류하려는 에콰도르의 기업인은 권한 있는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으로 등록한다.

에콰도르의 경우,

1. 부속서 9-가의 제1절에 따라 에콰도르에 입국하는 상용 방문자에게는 180일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고, 발급일부터 1년마다 한 번만 허용될 수 있다.
2. 부속서 9-가의 제2절에 따라 에콰도르에 입국하는 무역업자 및 투자자에게는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그 근거가 되었던 조건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연장될 수 있다.
3. 부속서 9-가의 제3절에 따라 에콰도르에 입국하는 기업 내 전근자에게는 2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체류기간은 그 근거가 되었던 조건이 유효하게 유지되는 한, 연장될 수 있다.

4. 부속서 9-가의 제4절에 따라 에콰도르에 입국하는 계약서비스 공급자에게는 12개월의 기간 중 6개월 또는 계약기간 중 더 짧은 기간까지의 체류기간이 허용될 것이다.

5. 90일을 초과하여 에콰도르에 체류하려는 한국의 기업인은 권한 있는 출입국사무소에 외국인으로 등록한다.

부록 9-가-3  
계약 서비스 공급자<sup>1</sup>

1	통신기기 기술자 및 연구원
2	통신장비 기술자 및 연구원
3	통신기술 기술자 및 연구원
4	통신망운영 기술자 및 연구원
5	정보통신 컨설턴트
6	웹엔지니어 및 웹프로그래머
7	석유화학 기술자 및 연구원
8	고무 및 플라스틱 기술자 및 연구원
9	농약 및 비료 기술자 및 연구원
10	도료제품 기술자 및 연구원
11	금속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2	세라믹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3	시멘트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14	발전설비 기술자 및 연구원
15	송전·배전 설비 기술자 및 연구원
16	전기계측제어 기술자 및 연구원
17	전기안전 기술자 및 연구원
18	전자제품개발 전문가
19	반도체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0	전자계측제어 기술자 및 연구원
21	전자의료기기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22	금형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3	플랜트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4	냉·난방 및 공조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5	건설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sup>1</sup> 공인회계사, 건축가 및 변호사에 대하여, 한국의 공인회계사 시험, 국가건축사자격시험 그리고 국가변호사시험은 한국에서 그러한 자격을 취득하려는 한국 국민뿐만 아니라 에콰도르 국민에게도 응시가 허용된다.

26	자동차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7	조선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8	비행기·철도차량 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29	섬유소재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30	섬유공정개발 기술자 및 연구원
31	염색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32	가스·에너지 기술자 및 연구원
33	건축시공 기술자
34	토목시공 기술자
35	생물학자(박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요구된다)
36	생화학자(박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요구된다)
37	환경 컨설턴트
38	가스·에너지 산업에 국한된 광업 기술자 및 연구원
39	가스·에너지 산업에 국한된 지질학 기술자 및 연구원
40	법률 자문을 제외한 일반 관리 컨설턴트, 재무 관리 컨설턴트, 마케팅 관리 컨설턴트, 생산 관리 컨설턴트
41	컴퓨터 하드웨어 전문가
42	컴퓨터시스템 감리 전문가
43	컴퓨터시스템 설계·분석가
44	시스템 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45	시스템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
46	응용 소프트웨어 설계·분석가
47	네트워크 프로그래머
48	데이터베이스 설계·분석가
49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래머
50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5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
52	컴퓨터 보안 전문가
53	웹 기획자
54	멀티미디어 기획자
55	웹마스터

56	화장품 및 비누제품 전문가
57	전기제품 개발 전문가
58	전기감리 기술자 및 연구원
59	산업기계공학 기술자 및 연구원
60	번역가 및 통역가
61	컴퓨터 이용 기계 디자이너, 컴퓨터 이용 전기 및 전자 장비 디자이너, 자동차 디자이너, 가구 디자이너, 직물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액세서리 디자이너, 가방 및 신발 디자이너
62	시각 디자이너 및 삽화가
63	인테리어 디자이너
64	조리사
65	호텔 및 관광 업체 관리자
66	마케팅 및 광고 전문가

부록 9-가-4  
주요 출입국 조치

한국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사증 발급 등에 관한 지침  
또는 수정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한 것

에콰도르에 대하여,

이주기본법 및 이주법에 대한 규정, 또는 이를 수정한 것